

남북 군사합의 및 현 안보상황에 대한 성우회원들의 우려

- 성우회원들은 대북한 군사조치가 타 분야의 교류협력 진전보다 과도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큼.
 -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우세한 전력의 운용을 제한하고 북측의 WMD 및 cyber戰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데 대한 우려임.
 - 군사조치는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쌍방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임.
- 정치Leadership과 군사Leadership 간 소통, 교감 부족을 우려함.
 - 경험있는 군사Leader들의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음.
 - 군사합의의 경우, 군사작전 책임자인 합참의장의 대국민 발표가 적절하였음.
- 전시작전권 전환, 미래 연합사 등 한미동맹은 전쟁 억제력을 위한 군사 대비 차원에서 유지, 발전되어야 함.
 - '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'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.
 - 미래 한미연합사 발전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.
- 11월 1일 시행 합의사항에 대한 문제점
 - ① 서해 해상에서 적대행위 중지 수역의 범위가 합의서와 정부 설명자료가 상이, 불명확하여 오해가 발생하고 있음.
 - 합의서에는 '덕적도 이북으로부터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'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정부 설명자료에는 황해도(북한군 4군단 책임) 지상을 포함하고 있음.
 - '연평도 포격사건'에서 보았듯이 북한군 4군단 해안포는 물론 야포 및 방사포, 실크웜 등은 우리측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서 군사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음.
 - ② 북한군의 군사합의 이행에 대한 확인, 검증체제 구축이 필수적임.
 - 남북 상호 검증요원이 상대측 조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필히 강구해야 함.
 - 과거 수 차례 합의는 검증 미실시로 초기 신뢰구축에 실패하였음.
 - ③ GP 철수의 경우, 아군은 현대화된 지상시설로서 '완전 파괴'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나 북한군은 대부분 반지하 초소로 복구가 용이함.
 - GP 건물을 보전하여 유사시 활용 및 추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

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.(철수와 폐기 용어 혼란)

- ④ Cyber 공간 적대행위 중지 및 소형무인기 운용 제한이 필요함.
 - 합의서에는 '모든 공간'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으나, 우리측에 치명적 위협인 북한군의 cyber 작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.
 - 북한군이 운용 중인 소형무인기는 아군의 R/D에 포착되지 않고 수도권 전역을 정찰할 수 있으므로 이의 운용 제한이 필요함.
- ⑤ 군사합의는 군사정전협정과 보완적 이행 노력이 필요함.
 - DMZ, JSA, 서해 5도, 한강하구 등은 군사정전협정(2조 13항)에 의거 UN군사령관 통제하에 있는 구역으로 UN사와 합의 하에 추진이 요망됨.

□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 운영 간 예상 문제점

- ① 서해 NLL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서해해상경계선으로 명문화 해야함.
 -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정하고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하여 등거리, 등면적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임.
- ②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협의 조항의 삭제가 요구됨.
 - 군사훈련 및 군의 전력증강은 주권국가의 고유 권리이며 북한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님.
 - 북한군의 핵·미사일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3축 체계 전력을 축소해서는 안됨.
- ③ 다양한 형태의 봉쇄·차단, 항행방해 문제는 국제 공조체제(PSI)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의혹 해소가 전제되어야 함.
- ④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시 위원장 및 위원은 군사작전 경험이 있는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/장교를 임명해야 함.

□ 예비역 장성들의 안보 우려 해소 차원의 소통 기회가 필요함.

- 예비역 장성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'무조건 반대'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한 '우국충정'의 발로임.

2018년 11월 5일

대한민국 성우회장 예비역 해군대장 유 삼 남

